「KB국민첫재테크예금」 특약

제 1 조 적용범위

"KB국민첫재테크예금(이하'이 예금'이라 합니다)"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만 18세이상 만 38세이하 개인으로 하며 공동명의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제 3 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.

제 4 조 계약기간

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6개월 또는 12개월로 합니다.

제 5 조 가입금액 및 한도

이 예금은 가입 시 1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예치하여야 하며, 1인 다계좌 가입 가능하나 1인당 총 가입금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제 6 조 예금의 운용

- ① 이 예금은 가입 시 자동재예치를 신청한 경우 제세금을 공제한 해지원금과 이자를 당초의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최장 3년까지(최초 계약기간 포함) 재예치 합니다. 단, 압류, 사고신고,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 계좌 및 자동재예치를 신청하지 않은 계좌는 재예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② 이 예금은 세금우대종합저축 또는 생계형저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가입한 계좌의 재예치 시고객이 지정한 세금우대종합저축 또는 생계형저축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재예치 합니다.
- ③ 제 5 조의 가입한도에도 불구하고, 자동재예치 시에는 재예치 되는 해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가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예치 합니다.
- ④ 자동재예치시 **재예치 통지를 요청한 고객에게만** 고객이 신청한 방법(SMS 또는 이메일)으로 통지합니다.

제 7 조 이율의 적용

- ① 이 예금의 만기이율은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합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.
- ②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된 계약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며, 우대이율은 제 8조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합니다.
- ③ 이 예금의 만기이자는 만기이율을 **1개월 단위로 복리 계산**하여 만기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
제 8 조 우대이율

- ① 이 예금의 모든 우대이율은 **만기해지하는 계좌에만**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된 우대이율을 해당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.
- ② 이 예금의 우대이율은 아래 항목당 연0.1%p씩 최고 연0.2%p까지 적용합니다. 단, '첫예금우대이율'은 가입 후 최초 계약기간 동안만 적용하며, '재예치우대이율'은 재예치계좌에만 적용합니다.

구 분	세부내용
첫예금 우대이율	KB국민은행 적립식예금(청약관련예금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제외)을 만기해지하고 1개월내에 이 예금에 가입하는 경우
패키지 우대이율	신규(또는 재예치)시 ① <u>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,「KB국민첫재테크적금」, KB국민카드 (체크카드 및</u> <u>KB국민비씨카드 포함, 기업카드 및 가족카드 제외)</u> 를 모두 보유하거나 ② 「KB樂star통장」(또는「KB樂star적금」)과「樂star체크카드」를 모두 보유한 경우
급여이체 우대이율	신규(또는 재예치)일이 속한 달의 초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KB국민은행으로 급여이체실적*이 1회 이상 있는 경우.
	 * 급여이체실적 인정기준 - KB국민은행과 급여이체 또는 대량이체 계약에 따른 급여성 선일자, 탑라인, 기업인터넷뱅킹 등에 의한 급여이체실적 - 「직장인우대종합통장」을 보유하고 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건별 50만원 이상 급여이체실적
재예치 우대이율	이 예금이 자동재예치 되는 경우

제 9 조 중도해지이율

이 예금을 만기일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,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신규 또는 재예치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을 **단리**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제 10 조 만기후이율

이 예금을 만기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,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신규 또는 재예치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이율을 **단리**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제 11 조 예금의 일부인출

이 예금은 **재예치 된 계좌만 해지 포함 총 3회까지 예금 일부 인출이 가능**합니다. 단, 일부인출 후 최저 1백만원 이상 잔액을 유지하여야 하며, 일부인출 금액에는 제 9조에서 정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.